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6.8.28.(금) 석간	배포	2026.8.27.(목)		
담당부서	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	책임자	팀 장	최동협	(02-3145-7977)
		담당자	선 임	경태수	(02-3145-7761)

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

- 12월 결산 상장사 등은 9월 15일까지 지정기초자료 제출 필요 -

- 주요 내용 -

◆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(9.1.~9.15.)에 맞추어 「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」를 실시합니다.

- ✓ 12월 결산 상장사(코넥스 제외),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금년 9.1일부터 9.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.
- ✓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.28일(금)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 협회, 코넥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(검색어: 금융감독원)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◆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,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

- ✓ 주기적지정·직권지정 사유, 구체적인 지정 기간·방법 등 주요 제도 내용과 함께,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 회사·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◆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·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
1 배 경

-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* 대상 회사[상장사(코넥스 제외),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]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*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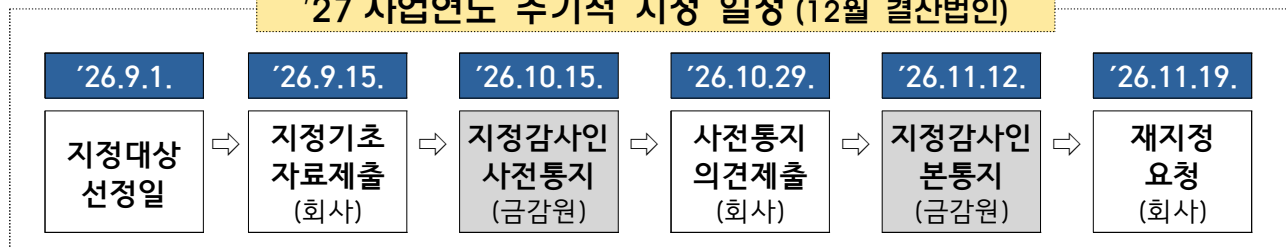
-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(2,700여 사*) 및 상장사 감사인(39사)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**이 '26.9월 중 도래함에 따라,

* 상장사 2,600여 사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00여 사

**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 : (회사) '26.9.1. ~ 9.15., (회계법인) '26.8.31. ~ 9.14.

- 금융감독원은 회사·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,
-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지정제도 주요내용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

'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 (12월 결산법인)



2 주요 설명 내용

- (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)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·제출* 요령을 안내

*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(<http://eacrs.fss.or.kr>) 을 통해 제출

-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, 소유·경영 미분리 여부(대형 비상장사),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하고,
-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,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,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하여야 함

- **(지정제도 주요 내용)** 감사인 지정사유(주기적지정, 직권지정), 지정기간, 지정방법, 재지정 요청 및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 소개
 - 작년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,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는 직권 지정사유,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을 설명
- **(주요 문의 사항)**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계법인의 최근 문의가 빈번하였던 사항을 Q&A 형식으로 안내

※ **주요 문의사항 [예시]**

- ▣ '24~'26 사업연도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받은 회사가 '26.9.1. 재무기준(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)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,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?
 - ➔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주기적 지정기간 중 발생한 재무기준 지정사유는 지정기간 연장 없이 당초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므로 '24~'26 사업연도만 지정을 받게 됩니다.
- ▣ 감사인 지정 후 단순히 회사 의사에 따라 다른 감사인을 재지정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?
 - ➔ 회사는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(群)*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(1회 限)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주기적 지정, 상장예정,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 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* (예) '나군'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'나군'인 경우
 - '가군'(상향군 재지정) 또는 '나군'(동일군 재지정)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
- ▣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후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?
 - ➔ 지정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,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(2, 3년차 지정 포함) 동안 지정됩니다.

3

향후 계획

- 유튜브(검색어 : 금융감독원)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→ 업무자료 → 회계)와 유관기관 홈페이지*에 동영상, 설명자료 등 게시

* 한국상장회사협의회(www.klca.or.kr), 코스닥협회(www.kosdaqca.or.kr), 코넥스협회(www.konex.or.kr), 중소기업중앙회(www.kbiz.or.kr), 한국공인회계사회(www.kicpa.or.kr)

- 회사·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

* 온라인 문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 : 민원·신고 → Q&A 신청
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(<http://eacrs.fss.or.kr>) : 회사·제출서류 → 열린창구